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2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전해철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2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승강기안전위원회 심의·의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에 대한 수거·파기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위반 당사자의 개선 노력, 해당 제품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안전위원회 소속 자문단, 분과위원회 등 설치근거 신설(안 제 5조)

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자문단이나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

나. 미인증 제품 후속조치 절차 정비(안 제25조 및 제26조)

정밀진단의 경우 방법과 수량 등을 명확히 하고,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고, 위반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거·파기 또는 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다. 부품 등 교체주기·가격정보 공개수단 확대(안 제13조)

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지 못한 제조·수입업체로서 관련 조합·협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아 권장 교체주기 등을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, 교체주기 등을 인쇄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
라. 안전인증 면제대상 연구·개발 목적 승강기·부품 규정 정비(안  
별표 5)

현행 면제대상 중 일부 오기사항 보완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 본문 중 “위원에게는”을 “위원 또는 자문단,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⑧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, 기술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 조에서 같다”를 “같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단서 중 “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조·수입업자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
2.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의 제공. 이 경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최초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제공하고, 그 승

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인쇄물의 제공을 요청할 때마다 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.

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·수입업자등의 요청을 받아 개선명령 및 수거 또는 파기명령의 이행기간을 원래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제조·수입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개선 또는 해소하기 위해 그 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
2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제조·수입업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 조정 요청을 위해 이행기간 조정으로 인한 위해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.

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.

1. 기한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

가. 승강기안전부품: 정밀진단을 의뢰한 날부터 30일 이내

나. 승강기: 정밀진단을 의뢰한 날부터 60일 이내

2. 내용: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19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22조제2항·제3항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용할 것

3. 수량: 위반행위의 내용,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. 다만 결정된 수량은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·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전체 수량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

4. 결과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

가.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그에 해당하는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: 적합

나.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: 부적합

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제25조제2항”을 “제25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별표 5 제3호 중 “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제17조제2호에 따른”을 “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의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br><u>&lt;신 설&gt;</u> | ⑦ -----<br><u>위원 또는 자문단,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-----.</u><br>-----<br>-----.<br><u>⑧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, 기술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 |
|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⑨ ----- 제8항-----</u>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1조(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1조(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② 제조·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(관리주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13조(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) ① 제조·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(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·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·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.

<신설>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 같다-----  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) ①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-----  
--.

1. 제조·수입업자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25조(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) ① (생 략)

<신 설>

2.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의 제공. 이 경우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최초로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제공하고, 그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인쇄물의 제공을 요청할 때마다 연 1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해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개선·파기·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·수입업자등의 요청을 받아 개선명령 및 수거 또는 파기명령의 이행기간을 원래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1. 제조·수입업자등이 위반행위  
로 인한 결과를 개선 또는 해  
소하기 위해 그 조치를 하고  
있는 경우

2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  
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 
이행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 
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제조·수입업자등은 제1항 각  
호에 따른 명령의 이행기간 조  
정 요청을 위해 이행기간 조정  
으로 인한 위해등이 없음을 입  
증하기 위하여 공단에 해당 승  
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  
해 여부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 
의뢰할 수 있다.

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
맞게 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 
해야 한다.

1. 기한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 
따를 것

가. 승강기안전부품: 정밀진  
단을 의뢰한 날부터 30일  
이내

나. 승강기: 정밀진단을 의뢰  
한 날부터 60일 이내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②・③ (생략)</p> <p>제26조(제조·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</p> | <p>2. 내용: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19조제2항·제3항 또는 제22조제2항·제3항 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용할 것</p> <p>3. 수량: 위반행위의 내용, 정도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. 다만 결정된 수량은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·수입한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전체 수량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4. 결과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</p> <p>가.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그에 해당하는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: 적합</p> <p>나.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: 부적합</p> <p>⑤・⑥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26조(제조·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) ① -----<br/>-----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.

1.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

2. ·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(법 제25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·제3호와 관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에 대한 정밀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.

1. 제25조제5항 ---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| (044) 205 - 4292 |